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20

제출년월일 : 2001. 11.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 참여확대, 남녀평등 의식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당해연도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결산잉여금은 적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9조)

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등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가. 2001년도 경상북도여성정책추진지침 사본(발췌) 1부.

나. 관련법령(발췌) 1부.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여성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4.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6.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④당해연도 결산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여성발전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年度
女性政策 推進指針

慶尙北道

6. 『女性發展基金』造成

ㅇ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의 기반 구축

□ 造成概要

ㅇ 근　　거

- 여성발전기본법 §29조
-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97. 12)

ㅇ 조성목표 : 30억원

ㅇ 조성기간 : '99~2004 (6년간)

ㅇ 재　　원 :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ㅇ 용　　도 : 여성지위향상, 능력개발, 생산적 여성복지사업 등

ㅇ 조성실적 : 10억원 ('99 : 2, 2000 : 3, 2001 : 5)

※ 시군 기금조성계획 : 별첨

□ 行政事項

ㅇ 여성발전수요의 급증추세 감안, 시군 기금을 확보토록 하기 바람

- 조례제정, 기금예산 확보 등

관 련 법 령(발 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29조 (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여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례 명 :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 제304호(2001년 8월 13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1년 8월 14일 ~ 2001년 9월 3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女性發展基金 造成現況

○ 市郡別

(200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례제정	조 성 기 간	조성 목표	조 성 액			비 고
				계	2000까지	2001계획	
계	5개시군		2,600	230	130	100	
포항시	2000.4.14	2000~2009	1,000	30	30		추경확보예정(50)
경주시	-						조례제정계획
김천시	2000.2.24	2000~2010	500	-			추경확보예정
안동시	-						조례제정계획
구미시	'99. 1. 7	2000~2002	500	100	50	50	
영주시	-						조례제정계획
영천시	2000.8.9	2001~2006	300	50		50	
상주시	'99.11.30	2000~2005	300	50	50		
문경시	-						
경산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ㅇ 의안번호 : 제220호

ㅇ 의 안 명 :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ㅇ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

2. 제안이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 참여확대, 남녀평등 의식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당해연도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결산잉여금은 적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등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ㅇ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1조 : 조례의 제정목적
- 제2조 : 기금의 재원조성
- 제3조 : 기금의 용도
-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영
- 제5조 : 위원회설치 및 구성
-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위원회의 회의
- 제9조 : 수당 및 여비지급
- 제10조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 제11조 : 회계공무원 지정 · 제12조 : 기금결산보고
· 제13조 : 관계규정의 준용
· 제14조 :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ㅇ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며,
·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남녀평등 의식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1. 11.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